

# 建築分野 制度改善策과 우리의 姿勢

## — 建築分野 不條理易抉對策 發표와 관련하여 —

大韓建築士協会副會長 金 基壽

지난 7月初 政府는 그동안 建築分野에 있어 서의 不條理 実態와 그 要因을 分析 검토하여 違反 또는 不良한 건축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척결대책을 수립,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우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책을 長·短期로 나누어 短期對策으로는 창구근무자, 건축사,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주로 하여 첫째, 위법건축행위의 근절을 위해 市道와 中央관계기관에 常設點檢班을 설치 운영하여 수시 및 정기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법건축물의 철거 및 사용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 건축주, 시공자 그리고 공사감리자를 동시에 연대처벌도록 하여 종전의 건축사 위주의 처벌에서 直接行爲者인 건축주나 시공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連帶責任制를 채택하였다.

또한 免許貸与행위를 하거나 不法施工을 둑인 監理하는 건축사나 건축사무소를 일제히 정비함으로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非理의 악순환을 제거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건축사가 보호받는 建築風土를造成하고자 하는 努力의一面을 살필수 있으며 둘째, 건축행정절차의 改善을 위해 複合民願細部處理基準을 수립시달하고 건축허가기간을 현실화 해서 처리기간의 短期로 인한 허가 신청서류의 不當한 처리를 방지했다.

세째로는 건축행위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창구근무자인 公務員과 건축사에 대하여 意識改革과 倫理觀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아울러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각종 매스콤을 통해 弘報啓導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되어있다.

한편 長期對策으로는 制度의 改善과 주변 부조리의 一掃를 위해 84年12月까지 건축관계법규를 전면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바, 첫째는 위

법 건축행위자의 처벌기준강화 방침으로, 즉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免許取消 범위와 登錄取消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소의 閉鎖处分과 건축사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고 非違사건과 관련, 解任된 건축직공무원은 일정기간 사무소 개설을 제한토록 했다. 또한 便宜위주와 위법시 가벼운 벌금만 물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처해온 건축주와 시공자도 連帶하여 처벌해서 책임의식을 일깨웠다.

둘째로 不實工事防止策을 마련 했으며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設計 및 監理를 분리하는 문제를 고려, 本회의 自律의in 施行에 맡기기로 했다. 또 건축분야 종사자의 사기양양책으로 모범건축사 포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상이 정부당국이 발표한 건축분야 부조리척결대책의 주요 골자이다. 이의 검토과정에서 摘出된 분야별 실태와 類型을 소개하면, 건축허가처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서류의 보완 및 처리지연, 신청서의 접수留存 또는 選擇的接受 그리고 民願人の 불필요한 召喚 등 허가신청서류의 부당처리나 승인시의 변태처리 등이 그 主要內容으로 되어 있고 창구근무자인 경우 적극적인 봉사자세나 책임감 결여 그리고 認許可 서류의 검토소홀 및 非專門職공무원의 배치로 인한 업무처리미숙 등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인사배치의 不合理한 점이 검토분석되었다. 또 건축주와 시공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私益優先관념의 澄湃, 法令의 未熟知와 준법정신의 결여, 기준무허가 건물도 철거당하지 않고 使用된다는 생각 등 고질화 된 부조리의식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건축시설기준 미달 시공과 粗雜施工 그리고 허가내용을違反한施工 등 不實한 시공의 실태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건축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의 측면에서도 건축 허용기준이나 건축시설기준을 위반한 설계를하거나 이를 自意든 he意든 默認監理하

는 사례가 허다하고 受注경쟁과열로 덤핑受注와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에 호응하며 경우에 따라 업무보조자의 설계에 의존 또는 免許를 貸与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이 건축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척결을 위한 대책과 그 作業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우리는 이를 強力히 推進코자 하는 당국의 의지를 잘 알수 있다. 다만 이의 施行에 있어 우리가 바라는 몇가지를 이 기회에 提言하고자 한다.

건축분야의 非理나 不條理 발생은 건축사를 비롯, 건축주·시공자 그리고 창구공무원 등 모두의 공동책임이며 어느 한 분야 종사자의 非理 등이 연쇄반응적으로 他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축분야의 경우에 있어 지금까지는 그 책임의 대부분을 건축사가지고 民怨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책임소재의 정확한 파악과 아울러 物理的制裁를 위주로 한 부조리제거보다는 제도개선 등 合理의in 방안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줄 믿는다. 건축사업부가 상당한 法律的知識과 一定水準의 전문기술능력을前提로 하고 있고 건축주나 시공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協同行爲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만의 준법정신이나 信義誠實에 입각한 책임있는 건축행위는 현실적으로 그 限界가 있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끝으로 우리는 이를 契機로 建築士는 憲章에 明示된 바와같이 造形藝術人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国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환경의 改善을 통하여 專門技術人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그 기본자세로 하여 自負와衿持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非理나 不條理에 野合하지 않고 道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나아가 脊지사회 건설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같이 다짐해야 되겠다. <\*>